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17
----------	------

제출년월일 : 2011. 9. .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명의 등록대상 범위 및 대체취득 시 종전차량 처분기한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을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명의 등록 대상범위에 포함하고,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취득 시 종전 차량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안 제2조제1항)
-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추어 재정비
- 다. 사치성재산 인용조항 정비(안 제2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의 :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11.8.17 ~ 9. 6)결과 : 의견접수사항 없음.
 - (2) 규제심사대상 : 협의완료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를 “등록된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을 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나 「주민등록법」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세목에 대하여”를 “세목에”로, “30일”을 “60일”로, “에 대하여는”을 “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 중 “해당하게 되는”을 “해당 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여부에”를 “등록여부에도”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아니하”를 “않”으로, “반환되는 경우에는”을 “반환된 때는”으로 한다.

제3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부동산은”으로 한다.

제4조 중 “부동산에 대하여”를 “부동산은”으로 한다.

제5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부동산은”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 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8조 중 “60일이상”을 “60일 이상”으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을 “경우는 제외한다)은”으로, “취득후”를 “취득 후”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을 각각 “경우는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부동산은”으로, “등에 대하여는”을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민간출연비율은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1조 중 “센타”를 각각 “센터”로,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부동산은”으로, “센타에 대하여”를 “센터”로 한다.

제12조 중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을 “제외한다.)은”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을 “충북신용보증재단은”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 산에 대하여는”을 “재산은”으로, “호에서 정하는 바”를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추징대상”을 “추가 징수 대상”으로, “추징한다”를 “추가 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와 제2호”로, “같은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을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와 제3호”로, “같은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을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과”로, “같은항단서의 규정”을 “같은 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과”로, “같은항단서의 규정”을 “같은 항 단서”로 한다.

제14조 중 “부 동산에 대하여는”을 “부동산은”으로 한다.

제15조 중 “부동산에 대 하여는”을 “부동산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우로서”를 “경우에”로, “재산 세”를 “재산세”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로서”를 “경우에”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를 “때”로, “추징한다”를 “추가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추징하고”를 “추가 징수하고”로, “추징한다”를 “추가 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취득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를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로,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을 “않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으로, “아니하”를 각각 “않”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아니한 때”를 “않은 때”로, “아니한 경우”를 “않은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아 있는 감면기간 동안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 중 “건축물에 대하여는”을 “건축물은”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부동산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1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를 “않았을 때는 감면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22조 후단 중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를 “때 감면자료 제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로 한다.

제2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한 자동차가 등록된 지 60일이 지나지 않았고, 자동차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였을 때 적용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 4.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 4. (생략)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 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 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 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
—————
—————
해당 된 ——————
—————
—————
—

2. ~ 4. (현행과 같음)

② 동록여부에도 않은

1. _____

_____.

_____.

않 _____ 반환된

때는 _____

_____.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 제 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5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
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
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
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
한다.

제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

제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조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
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
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8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
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
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
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
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
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
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
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
감한다.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숨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

경우

는 제외한다)은

②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 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 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3조에 따라 설립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충북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

----- 부동산은 -----

----- 등은 -----

----- 민간출연비율
----- 은 그렇지 않다.

제1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

----- 센터 -----
----- 부동산
----- 은 -----

----- 센터 -----

-----.

제1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 제외한다.)은 -----
----- 충북
----- 신용보증재단은 -----

한다.

제1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
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
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
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
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
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
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2 내지 제
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
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
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
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
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재
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

— —

제1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
면) -----
----- 재산
운 ----- 호
----- . -----

----- 추가 징수 대상
----- 추가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 5항제2호와 제3호

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 을 경감하며, 같은조제1항제2호의 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
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
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1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
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
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재산세의 1
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6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제1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부동산은

제1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부동산은

제16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경우에 -----
----- 재산세 -----

-----.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초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초징한다.

1. · 2. (생 략)

3. 부동산 취득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

----- 경우에

-----.

③ -----

---- 때 ----- 추가
징수한다. -----

추가 징수하고-----
----- 추가 징수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
----- 않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 않-----

4. -----

----- 않은 때-----

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8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중
주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
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
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
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
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
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해
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
외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신청일 기
준 24개월이 전에 이루어진 신규투자
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중에
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
용창출 인원이 1년이상 계속 유지되
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 않은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아 있는 감면기
간 동안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후단삭제>

제17조(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 ----- 건축 물은 -----.

<p>제2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2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p>	<p>제20조(감면 제외대상)----- ----- <u>지방세법</u> 제13조 제5항----- -----.</p> <p>제22조(감면자료의 제출) ----- ----- ----- ---. -- 때 감면자료 제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 -----.</p> <p>제25조(시행규칙) ----- <u>시행에</u> -----.</p>
--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개정 2011.3.29>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3.29>